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77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박홍배 · 윤준병 · 한준호
김 윤 · 박 정 · 송재봉
박희승 · 이정현 · 김한규
김태년 · 진성준 · 민병덕
이정문 · 김남희 · 박지원
김남근 · 이주희 · 김현정
김우영 · 박정현 · 안도걸
정진욱 · 서미화 · 김태선
최혁진 · 김원이 · 부승찬
정태호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의 양성 및 관리 제도는 환경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나 현행 제도는 교육과정 평가 및 자격 관리와 관련된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자격 취소 이후 재취득에 대한 제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정

지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자격관리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환경교육사의 자율적인 전문성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해 규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또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결과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격 취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완하여 자격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4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의 평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 발급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는 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인정한다.

- ② 부정확한 방법으로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거나 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가 정지되거나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평가일부

터 3년간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④ 환경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제16조제2항 각 호”를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환경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발굴·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자격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해당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5. (생략)</p> <p>6. <u>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u></p> <p>7.·8.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16조(환경교육사)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p> <p>1. (생략)</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u>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가. ~ 마. (생략)</p>	<p>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7.·8.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환경교육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집행이 면제된 날부터</u>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3. (생략)

<신설>

③ ~ ⑦ (생략)

<신설>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의 평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 발급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능 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인정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거나 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가 정지되거나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평가일부부터 3년간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④ 환경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생략)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발굴·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삭제>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삭 제>

<삭 제>

<삭 제>

으로 정한다.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5.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2조(청문)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④ 제1항-----

-----.